

서울북부지방법원 2021. 9. 28 선고 2021가단105153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 고 주식회사 A

소송대리인 변호사 유병연

피 고 1. B

2. C

변 론 종 결 2021. 9. 7.

판 결 선 고 2021. 9. 28.

주 문

1. 피고 B은 원고에게 5,408,494원 및 그 중 959,322원에 대하여 2020. 11. 25.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2.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/13 지분에 관하여,
가. 피고들 사이에 2018. 8. 20.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한다.
나. 피고 C은 피고 B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3.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.
4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

가. 인정사실

- 1) 피고 B은 1992. 3. 19. 주식회사 D의 신용카드 회원약관을 이행할 것을 약정하면서 위 회사로부터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였다.
- 2) 그런데 피고 B은 위 신용카드 사용대금 등을 연체하기 시작하였고, 주식회사 D는 2003. 4. 15. E 유한회사에게 피고 B에 대한 위 신용카드 사용대금 채권을 양도하였고, 같은 날 피고 B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.
- 3) E 유한회사는 2006. 10. 25. 주식회사 F에게 피고 B에 대한 위 채권을 양도하였고, 2006. 11. 10. 피고 B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.
- 4) F은 2011. 4. 26. G 유한회사에게 피고 B에 대한 위 채권을 양도하였고, 2011. 5.경 피고 B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.
- 5) G 유한회사는 2019. 1. 25. 원고에게 피고 B에 대한 위 채권을 양도하였고, 원고는 채권양도통지 사무를 위임받아 피고 B에게 2019. 3. 14. 위 채권양도사실을 내용증명우편으로 통지하였다.
- 6) 2020. 11. 24. 기준으로 피고 B에 대한 위 신용카드 사용대금 채권액은 5,408,494원(=원금 잔액 959,322원 + 인수전 이자 잔액 3,953,374원 + 인수후 이자 잔액 495,798원)이고, 약정 연체이율은 연 24%이다.

[인정근거] 다툼 없는 사실, 갑 제1 내지 3호증(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)의 각 기재, 변론 전체의 취지

나. 판단

위 인정사실에 의하면, 피고 B은 원고에게 양수금 5,408,494원 및 그 중 원금잔액 959,322원에 대하여 위 기준일 다음날인 2020. 11. 25.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연제이율인 연 24%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.

다. 결론

따라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.

2.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

가. 청구의 표시

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
나. 적용법조

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(자백간주에 의한 판결)

판사 반정모

별지